

#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 음란물 인식 및 차단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에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이용 이동통신에 특정앱을 강제로 설치하고 감시하는 문제

2015년 4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1. 먼저 이 법과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웹하드와 청소년이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웹하드, 청소년이용 이동통신), 기술적 조치 우회 금지(웹하드, 청소년이용 이동통신), 로그 기록 보관 의무화(웹하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웹하드업체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법제22조의3 제1항)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음란물 인식, (예방적)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을 하도록 하고 인식에 실패한 경우 (사후적)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하도록(시행령 제30조의3)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서 지칭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주로 웹하드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만 놓고 보면 반드시 웹하드 사업자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은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다운로드한 자에게 비용을 지불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P2P 서비스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웹하드로 국한하여 서술합니다.)

둘째, 웹하드 서비스에 위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고(법 제 22조의3 제3항) 2년간 보관하도록(시행령 제30조의4)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계약하는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법 제32조의7)

그 삭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시행령 제37조의4) 하였습니다.

## 2.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령은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이고, 만약 그 감시 기술이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시행되거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매우 심각한 침해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은 모든 불법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 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채택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서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매개자가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됩니다.

(2) 이 법령이 사업자에게 의무화한 내용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이용자 익명성 보호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를 의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익명성이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음란물과 웹하드 서비스나 이동통신 외에 다른 모든 불법 콘텐츠나 모든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 법령에서 웹하드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한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만약 그 기술적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법령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를 감시하지 않을까?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웹하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는 목록(데이터베이스)을 통한 차단입니다. 이 법령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일단은 "제목 비교", 즉 목록을 통한 차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인 음란물 목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자작 음란물도 매일 생성되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그 대상은 음란물만이 아니라 전체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시행령은 그 차단의 기준으로 제목 뿐 아니라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법에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도 위임입법인 시행령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목록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여 악용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음란물(1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판단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주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논의하면서 '불법집회시위' 관련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 적도 있습니다(실제 개정에 이르지 못하는 함). 정부가 간주하는 불법 콘텐츠를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이 법령의 조항들이 악용되거나 향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이용내역을 보관하는 것일까?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식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가입 회원의 경우에는 아이디 등 회원가입정보가 식별될 것이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IP주소나 맥주소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이렇게 식별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미 일부 저작권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099> 웹하드 사업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용자를 감시한다면 이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법령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이 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로그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기존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그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관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익명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는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도 없습니다. 법에서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했다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보관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기간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4) 이 법령이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에서는 차단수단을 '제공'만 하도록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가 특정 앱(SW)의 구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행 일수를 정확히 계산

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수집·보관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장치 기술발달에 따라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의 감시 대상이 음란물이나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으로부터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 위에서 거론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누구입니까

(2)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음란물 인식,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의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2)-1. 음란물 목록을 통한 조치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밖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하는지 여부

(2)-2. 만약 음란물 목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목록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하는지

(2)-3. 음란물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는지

(2)-4. 만약 목록 외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칭하는지

(2)-5. 이용자가 사용하는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

(3)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서 웹하드 사업자가 보관하는 대상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3)-1. 웹하드 서비스 등의 가입 이용자 정보만 대상으로 하는지 미가입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3)-2. IP주소 등 그 보관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32조의7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4)-1.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4)-2. 설치된 앱의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3.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4. 삭제나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주기가 어느정도 정기적인지 혹은 실시간인지.

<끝>